

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」가 상위법령인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과 「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」에 저촉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수탁운영중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권리처분행위 방지 조문 삽입(제4조)

○ 공유재산 및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일부조문을 정비(제5조)

·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사용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령과 도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체육회관의 운영위탁에 있어서 수탁운영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타인 또는 법인에게 전대 및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고

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하도록 하는등 도체육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